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84
----------	-------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자 : 윤영석 · 이상희 · 백종현
서천호 · 박성민 · 박덕흠
정동만 · 조경태 · 김미애
이종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는 고령·질병 등으로 거주복지 지원이 절실하나, 현행 제도는 “양로지원” 중심으로 되어 있어 요양(돌봄) 필요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배우자와의 동반 지원이 명확하지 않아 가족관계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실제로는 요양시설 이용 필요가 큰 대상자의 특성과 지역적 편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양로시설은 주거·급식 등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노인의료서비스 등 필요도를 전제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과 맞닿아 있어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

이에 “양로지원”을 “양로·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동반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국·공립 외 양로·요양시설에도 위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 단위 생활의 지속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실질적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의 제목“(양로지원)”을“(양로·요양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국가의 양로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요양시설”로 하며,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요양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양로·요양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요양시설 외의 양로·요양시설에 위탁하여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4조의2(양로지원) <u>보훈보상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u>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후단 신설></u></u></p> <p style="margin-top: 20px;"><u><신 설></u></p>	<p>제54조의2(양로·요양지원) ①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요양시설-----</u> <u>-----. 이 경우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요양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u></p> <p>② <u>국가는 제1항에 따른 양로·요양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요양시설 외의 양로·요양시설에 위탁하여 할 수 있으며,</u></p>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